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첨부서류 등(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회 기간 규정(안 제10조)
- 인사청문회 공개 원칙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규정(안 제15조~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7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된 범위 안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직위만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개정 조문해설에 따라 각 호별로 살펴보면 안 제1호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안 제2호는 우리 구 출연기관인 영등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구성시기,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면밀한 인사청문을 위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술의 청취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때에 의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사유 외에도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구 시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7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인사청문(聽聞)의 기본 진행방식을 질의답변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대상자는 질의 등에 대하여 답변 등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정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하도록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23.9.22.시행)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106개의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서울 8개의 자치구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음. 또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06(2024. 1. 5.)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 직위 후보와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의 기관장 직위 후보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인지를 인사청문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요청안의 필수 첨부서류, 자료제출요청, 답변 의무, 검증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인사청문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써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요청으로 연장된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시에 구청장이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위해 마련한 자료제출요청·검증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 등의 요건을 붙이는

등 집행기관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선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전승관·정선희·최봉희
유승용·신흥식·이성수
김지연·남완현·박현우
양송이·우경란·이규선
이순우·이예찬·임현호
차인영·최인순 의원(1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 다.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첨부서류 등(안 제5조~제6조)
- 라. 위원회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회 기간 규정(안 제10조)
- 마. 인사청문회 공개 원칙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규정(안 제15조~제1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

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